

<論 文>

電波通信의 法的 性質 研究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Radio-Communication

趙 鼎 錄*

Jhow, Jeong Hyeon

目 次	
1. 緒 論	4. 電波通信의 法的 性格
2. 電波通信의 法的 定義	1) 海底 Cable 에 관한 國際法理論
3. 電波通信의 法 理念	2) 電波通信에 관한 法理
1) 電波通信에 관한 電報取扱法	3) 技術的 國際協力의 限界性
2) 先進國 無線通信條例	5. 結 論
3) 現行法上 電波通信의 法 理念	

要 約

電波通信에 관한 法源이며 法典인 國際電氣通信協約은 電波通信에 관하여 人文, 社會 및 自然의 各系科學의 要素가 有機의으로 積合한 統合科學이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고 國際電氣通信聯合은 이 原理와 科學性에 立脚하여 國際協力を 위한 法理念과 그에 基礎한 諸般規制를 立法 施行하고 있다.

이 法理念과 各種規制의 目標는 超領域의인 世界平和와 人類福祉를 指向하고 있어 恰似 UN憲章과 世界人權宣言의 理念과도 並列하며 다른 한면에서는 國際通信法의 制定歷史上, 오히려 UN憲章보다 先行되고 있는 理念이기도 하다.

따라서 電波通信에 관한 學術研究와 教育訓練은 勿論이고 그밖에 이에 관계되는 立法, 行政, 產業 등 모든 關係領域에서는 이 科學性과 超領域性을 基盤으로 모든 試圖가 行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Abstract=

The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an original law and code on radio communication clearly regulates that the radio communication is a synthetic science compounded organically with various aspects of the humanities, social and natural scienc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Un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has put into effect legal ideas and legal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ose principles and scien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光云電子工大 無線通信學科；正會員

The goal of these international regulations is to pursue world-wide peace and human welfare. In this regards, these regulations are very similar with the ideal of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and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e established history in a sense, we can safely say that the former has a preceding idea than the latter.

Accordingly, the principle of science and wide-ranging Characteristics of the radio communication must be applied to the problems of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al training, not to speak of the concerned fields of legislation, executive administration and industry.

1. 緒論

現代社會에서 電波通信은 그 時空的 限界를 초월하여 人類生活을 거의 同時同所化하고 있다. 19世紀初伊太利의 靑年 말코니(Marconi)에 의하여 實用化된 無線電信(Wireless-Telegraph)은 처음 國防用 또는 海上安全을 위한 특수한 分野에서만 脚光을 빛나 왔지만 第一次 및 第二次 大戰을 치루는 동안 國防의 宇宙化와 立體化에 따라 그 用途와 效用을 擴大하는 한편 바다가 人類에의 貢獻度를 增大함에 따라 그 價值와 役割을高度化하였을 뿐 아니라 人類文化의 發展과 科學의 躍進에 발맞추어 無線電信은 電波通信化(Radio Communication)함으로써 그 역할이 個別性에서 集團化 또는 特殊性에서 普遍化하기에 이르러 이제는 온 人類를 通信化(Communicationalize)¹⁾하는 先驅的 存在가 되고 있다.

人類가 開發하고 構築한 近代的 體制인 政治, 經濟, 外交, 國防, 數育, 文化福祉 등 諸領域에서 假令 Non-Communication 現象을 假想해 보자! 그 結果에 樣相은 어떠하겠는가? 原始的 無智, 分離反目, 混沌·葛藤등 現代人이 가장 싫어하는 各種 暗黑現象이 瞬息間に 壓倒될 것이 뻔하다. 다시 말하면 電波通信이 빠져 있는 人類社會란 꿈에도 그려 볼 수 없는 程度로 現代는 電波通信에 의하여 紐帶되고 操縱되고 營爲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事實이다.

通信이란 원래 狹廣의 두가지 뜻이 있다. 좁은 의미의 通信은 交信(Correspondence)으로서 하나하나의 個別의 通信作用을 뜻함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通信은 개개의 交信作用을 總合한 統合的 社會現象 또는 社會過程을 뜻하며 通信(Communication) 本來의 樣態인 것이다.

이 通信은 政治, 經濟등 다른 社會現象과 共存並行하면서 人類를 위하여는 相互相乘的, 力動的 役割을

行하는 過程이다. 그리고 이 通信은 人間의 意思等 精神的 知的 諸元으로 形成되는 通信內容과 電流, 電波, 光線등 人爲的 通路인 通信媒體와 이를 兩者를 有機的으로 統合操作하는 通信作用者로서 構成되는 하나의 獨立된 複合的 社會現象인 것이다. 이 현상은 外在의 다른 現象과 密着된 狀況에서 表裏一體的 循環反復을 계속하는 作用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通信外周邊은勿論이고 通信을 專攻하는 通信內의 分野에서 까지도 通信 혹은 그 原語인 コミュニケーション(Communication)에 대하여 옳은 理解 또는 正當한 認識이 매우 低調한 傾向이다. 특히 Correspondence와 Communication을 同一視 或은 倒置視하는 事例가 非一非再하여 이 分野의 正位와 發展을 阻止하는 要因이 되고 있음을 遺憾이 아닐 수 없다. 結局 이러한 錯覺과 沒理解은 通信에 관한 正義와 眞理를 파악하지 못한 不實과 無知에서 유래된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비록 緒論의이기는 하지만 電波通信에 관한 正義와 眞理를 그法的 性質에서 探究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 論據는 100年的近代史를 이어 왔으며 各國이 앞을 다투어 加盟하고 있는 世界機構인 ITU(國際電氣通信聯合)의 國際法에 두기로 하겠다.

本論의 内容은 電波通信에 관한 法的 定義, 法의 理念 및 法의 性格의 順으로 論하기로 한다.

2. 電波通信의 法的 定義

전파통신(Radio Communication)이란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과 同意語로서 國제전기 통신협약 제2부속서에 의하면, 전파통신은 電波에 의한 電氣通信(Radio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 by means of Radio Waves)이다.

여기서 電氣通信(Telecommunication)의 定義를 먼저 理解할 必要가 있다. 同 제2부속서에 의하면 「電氣通信」이란 有線, 無線, 光線 또는 기타 전기자기적

1) 道德化를 Moral-Moralize라고 하는 것 처럼 通信化를 Communication-Communicationalize라고 表記할 수 있다고 본다.

方式에 의한 모든 種類의 記號, 信號, 문언, 영상, 음향 또는 情報의 모든 전송발사 또는 수신이다. 이 電氣通信의 定義는 電波通信을 理解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아 同 國際協約의 원문을 보면

Tele-Communication; Any transmission, e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and Sounds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by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²⁾

로 表現하고 있다.

그러므로 電波通信은 「電波」라고 하는 通信媒體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또는 정보」라고 하는 通信內容(情報라고 통칭할 수 있다)을 「전송, 발사 또는 수신」이라고 하는 作用, 즉 통신사나 이용자가 行하는 通信作爲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要素는 서로 結合, 調和 또는 複合하는 有機的 社會現象을 形成하는 것이다.

電波通信은 그 利用하는 目的과 方式에 따라 무선전신, 무선전화, 방송 또는 무선전보등 下位類型으로 區分되며, 「무선국」이라고 하는 「場」에서 행하여지는 社會作用의 하나인 것이다. 무선국은 無線設備와 그를 操作하는 무선종사자의 總體(전파관리법 제 2조 정의)로서 行政法上 營造物의 일종이며 電波通信社會를 形成하는 最下位의 基礎의 「場」인 것이다.

電波通信에 관한 위와 같은 國際法上 定義는 「電波通信에 관한 構造와 機能의 논거가 되는 것이며 電波通信의 本質과 屬性을 邁確, 타당하게 表現하여 그 統合科學性을 명시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電波通信의 法의 定義는 바단 國際法上 혹은 一般法의 범위내의 定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電波通信에 관한 真理와 正義의 底礎가 될 수 있으며, 電波通信에 관한 학술, 科學, 數育, 企業, 行政, 法律 등 모든 問題는 이 法의 正義에 거점을 두고 論義가 展開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³⁾.

電波通信은 그 媒體인 「電波」와 그 客體인 「通信內容」이 그 主體인 사람(전문가 또는 이용자)에 의하여 操作, 處理, 利用되는 「通信作用」이므로 電波=自然系, 通信內容=人門系, 通信作用=社會系가 綜合 總動員되는 統合科學的 社會作用이 아니될 수 없는 것이다.

電波通信의 通信作用은 電波라는 媒體에 의하여 傳播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속적이기는 하나 一定한 時間이 所要된다는 點에서 하나의 社會過程이 됨이 分明하

다. 원래 「社會過程」이란 「價值를 形成 分配하는 상당한 時間이 所要되는 交互作用」⁴⁾이며 이 交互作用은 一定한 時間동안 一定한 制度를 通하여 주어진 資源을 相互活用하는 現象이므로 電波通信作用은 通信價值를 形成 分配하는 相對的 交互現象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通信價值」가 무엇이나 할 때 「전달」에 치중한 의사소통, 또는 의사전달등 종래의 前近代的 價值觀이 存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時代의 각각에 부합하기 위한 意味에서 「情報의 流通」이라고 表現할 수 있으며 이 表現은 시이적절하다고 밀어진다. 經濟가 有形의 通貨 또는 財貨의 流通이라고 表現되는 點에 의 제(擬制)하여 電波通信에서는 無形의 情報를 經濟的 有形物에 대치 대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情報의 流通」은 그 情報의 欲과 그 流通의 效用을 對象으로 그 價值를 부여하고자 하는 通信기능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

이러한 論理는 1950年 後半부터 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通信理論의 社會科學에의 적용동향에서 立證이 된다⁶⁾. W.Schramm은 社會的 Communication理論의 model로서 위와같은 전파통신 구조원리와 유사한 C.E. Shanone 및 Z.Weaver의 전기통신과정 model을 그대로 전용하였으며 Reusch와 Bateson은 N.Winner의 Cybernetics(통합과학)를 人間 Communication의 문제에 투영하여 Communication過程의 理論化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자인 Shanone의 通信過程論은 政治 心理學者인 H.D. Lasswell에 의하여 그대로 그 원형이 받아 들여져 通信에 관한 基礎的 課題는 「누가, 무엇을, 어떤 통로로 누구에게, 무슨 效果로 전달되는가(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ort?)」를 探究하는 것에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Lasswell의 이 說明方法은 Shanone의 通信過程原理에 근거하고 있을뿐 아니라 상기한 電波通信에 관한 法의 定義에서 도출한 그 構造 및 機能原理에도 合致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Lasswell은 通信科學을 5개의 研究領域 즉 「送信者 分析」, 「內容分析」, 「通路分析」, 「受信者 分析」 및 「效果分析」이라는 分業方法을 創案해 내고 있는 것이다⁷⁾.

Lasswell의 이 主張은 電波通信의 法의 定義에서 引出한 電波通信의 原理와 거의 一致된다고 볼 수 있으며 差異點이 있다면 通信作用의 主體인 사람을 送信者

2) 國際電氣通信協約附屬用語의 定義(1973년 Malaga條約)

3) 趙鼎鉉, 國際電波法規論, 實學社, 서울 1973, p25

4) 曹圭申, 家庭法序說, 建國大學校 學術誌, 建國大學校 出片部 서울 1973, p.126

5) 趙鼎鉉, 電波通信에 관한 國際法 建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75, p.47

6) 加藤秀俊, 文化と コミュニケイシヨン, 思索社, 東京 1971, pp.25-41

7) 上揭書, p.31

와 受信者로 區分한 것과 電波通信의 機能을 通信效果로 바꾸어 놓은 것인데 結果的으로 兩者는 同一한 意味이며 그 對象도 똑같은 것을 파악, 지적하고 있다고 보아 과오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電波通信을 취급하거나 規制함에 있어서는 勿論, 기타 電波通信에 관한 모든 問題는 이러한 기본적 課題에 對한 認識과 理解에 根據를 두지 않으면 아 니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듭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電波通信에 관한 法的 定義는 電波通信에 관한 科學的이고 根源的 底礎이며 거점인 것이기 때문에 電波通信에 관한 모든 論議는 그 要素인 電波, 通信內容 通信作用(사람) 및 通信價值의 理解와 파악에서부터 그 기점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電波通信이 행하여지는 最小單位의 「場」이 무선국이다. 國際法 規制를 통하여 두개 以上의 무선국 운용이 행하여질 때 電波通信은 우주공간적, 초국가적, 不分割的 社會現象 또는 社會過程으로 확대되는 것이며, 그 過程에서 電波通信은 人類社會에 다양하고 貴重한 通信價值 또는 그 反對의 逆效用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電波通信에는 그 特殊한 性格에 입각한 國際秩序가 要請되는 것이며 그秩序確保를 위하여 國際電波法은 그 必須的 要件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電波通信의 法 理念

通信이란 원래 相對的 情報의 유통과정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무선국에서 電波通信이 행하여질 때 이 「場」인 局相互間에 전파에 의하여 연결이 되어 通信路 혹은 통신망이 形成된다.

이 通信路의 端末인 무선국이라는 場이 一個國家 領域內에 소재하면 單一國家에 한한 문제이고 無線局의 소재가 각異한 國家에 소재할 때에만 國際問題가 생기는 것같이一般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電波通信의 경우는 그 電波의 生理的 傳播性때문에 그 무선국의 소재가 國內外 여하에 상관없이 전파자체의 本質上 우주공간적 國際性이 항존하게 된다. 이 國際性은 전파가 空間을 전파한다는 点에서 混信防止와 주파수의 分配에 대한 規制와 그 전파에 실려서 전파하는 通信內容에 대한 各國 利害關係가 수반되게 되는 것이다.

1) 電波通信에 관한 전보취급법⁸⁾

1903년 만국무선전신예비회의 결의록에 나타난 最初의 電波에 관한 국제立法要旨와 理念은 다음과 같

이 評價할 수 있다.

(1) 무선국상호간에는 그가 채택한 設備의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相互交信을 행할 義務가 있다.

(2) 협상국은 육해간 모든 통신이 容易하고 조속하게 成就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국간에서 이 條件을 充足시킨 때에는 기타 각종 特殊한 장치를 使用하는 것은 무방하다.

(3) 모든 무선국은 物質的 부담이 없는 限 海上人命安全을 위한 通信內容을 最優先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상 요지는 相互通信의 義務와 海上安全을 위한 通信內容의 우선 취급을 의무화한 것으로 權利를 主張한 것보다 협상국相互間에 전파통신을 통하여 國際法上一般原則인 善과 互惠互讓을 다짐하면서 合意한 規範的性格을 가지고 순수한 國際協助를 理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수한 전파통신에 관한 最初의 國際法上理念은 人類의 福祉와 公益을 위한 限 그대로 계승되어 現行 條約全文과 그 内容에 수용하고 있다.

전파통신에 관한 國際法을 준수하면 모든 國家가 共同利益을 얻게되고 規定된 義務를 위반할 時는 모두 損害를 보게 된다는 教訓이 定立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先進國 無線電信 條例⁹⁾

그러나 上記 電波通信에 관한 國際法의 理念과는 달리 歐美 先進國에서 이 國際法에 基底하여 立法한 各國內의 規制精神은 國家權力에 의한 法的 強行性이 매우 엄격하였다. 이것은 國際法上 各國主權을 維持하고 그 國家利益을 위한 當위적 경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각국정부가 특히 電波通信法을 制定한 이유는 電波通信을 유선통신과 類推視할 때는 電信法의 자리를 占게 되는 바 電信法에 의한 사설전신에 관한 許可條件과 감독 방법은 아주 완만하였으므로 無線電信을 그 法律에 의거하여 규제한다면 軍事上妨害가 될 뿐 아니라 불의의 위험을 자초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러므로 무선국相互間의 電波通信安全을 위하여는 별도 特別한 감독이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電信法과는 아주 별도의 立法이 必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傾向은 佛, 獨, 美, 英, 加國이 共通의 理念이다. 有線通信은 그 通信媒體가 特定한 Wire이므로 그 선로만 規制하면 되지만 電波通信은 그 媒體가 전파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분배, 混信防止, 電波傳播 기타 通信內容에 대한 規制 혹은 保護가 強要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8) 中川龍治, 歐米ニ於ルケ電信電話事業, 通信省通信局, 東京 1906, p.608

9) 上掲書, pp. 624-627

(2) 영국 우정장관이 電波通信法案을 國會에 제출할 때에, 그 提案 說明에 의하면,

① 戰時 등 사변에 對하여 通信內容의 비밀보장이 절실하다(통신감독권).

② 相鄰한 무선국은相互間에 混信이 必至의 이므로 그 數와 位置를 規制하여야 한다(무허가 무선국금지).

③ 軍用通信의 安全을 위하여 私用通信을 規制하지 않으면 안된다(혼신방지, 통신방해 예방).

英國政府는 軍 및 관용 通信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家統治權에 의한 무선국 허가권, 감독권, 통신내용 단속권, 관, 공용통신 우선권을 갖게 하고 특히 전파 통신의 私用이 許容된 私人은 군, 관용 통신을 위하여 상당한 受忍과 自制를 強要받았다고 볼 수 있다.

電波通信 初期의 各國政府의 主權은 電波通信에 대하여 이와 類似한 絶對獨占權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民權의 신장추세에 따라 電波의 利用을 私人에게도 許用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차대전 이후에는 電波利用을 大衆에게 供開하는 것이 自由民主國家의 共通된 傾向이 되었다.

3) 現행법상 電波通信의 法理念

현행 Malaga-Torremolinos 協約(1973년) 前文에는 「체약정부의 전권위원회는 國內 電氣通信을 規制하는 각國의 主權을 充分히 승인하고 能率의 電波通信業務에 의하여 諸國民間의 關係와 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國際電氣通信聯合의 基本文書인 이 協約을 作成하는 데에 合意한다」라고 선언되고 있다.

이 前文에 의하면, 첫째, ITU는 각 회원국 主權의 國內 電氣通信規制權을 아무 制限없이 승인함으로써相互平等權을 존중하였으며, 각국 자위권과 독립권을 充分히 認定한다는 것을前提하였고, 둘째, 전파통신을 주축으로 하는 모든 전기통신의 改善과 그合理的利用을 위한 國際協力を 維持 促進함으로써 能率의 效果의 電氣通信을 確保하고, 모든 人類에게 그 平等한 提供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발달과 그 능률적 운용을 기약함으로써 世界平和와 人類福祉를 위한 諸國民間, 諸民族間 또는 諸國家間의 關係와 협력을 促進하자고 相約하였고, 세째, 이러한 協約은 他意가 아니라 스스로 自意에 의하여 合意함으로써 成立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電波通信에 관한 法理念은 이미 電波通信 初期에 定立된 것인지만 現在에도 그 精神이 계승되고 있으며, 法主體인 國家主權의 平等權, 자위권 및 獨立權의相互保障과 승인을 約束하였고近代의이고 效率

의인 電氣通信을 통한 國民間의 關係와 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相互合意에 의한 成立法인 自由平等(自由平等) 조약을 講明하고 있는 것이다. 이 法理念은 UN의 平和 및 福祉에 直結되고 있으며 個人的 기본權을 確保하기 위한 世界人權宣言에도 詛用하고 있다. 電波通信은 그 本質上 國際的 法規制를 必須의前提로 하고 있으면서도 法主體에 부여된 諸權利보다 電波通信에 관한 國際的 條理, 國際慣行 또는 그 不分割的 超國家性에 根據한 義務先行·國家責任·國際協力 또는 國際인조를 그 基本理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¹⁰⁾.

4. 電波通信의 法的 性格

國際電波通信에 관한 19世紀 初부터의 國際的 規制는 國際行政聯合의 性格을 견지하며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전파통신에 관한 諸條約의 規定, 國際會議, 또는 그 實際의 解說과 適用에서, 적어도 전파통신의 作用에 관한 한 잘 반영되고 있다. 즉 전파통신의 작용을 規制함에서 기술적 또는 行政적 解說과 조정을 最終的目標로 하였을 뿐 法的 쟁의에 대하여는 이것을 되도록 기피하여온 傾向이 높후하다. 다만 ITU의 内부구조, 표결권, 内部規則, 構成員 資格 등 問題에 대하여는 法的 處理가 아니될 수도 없지만 그들 規制가 정돈되어 있어 現在 國際組織法의 시범형이 되고 있다.

전파통신에 관한 기술적, 업무적 견지에서는 그 媒體인 通信路가 端末시설의 소재지에 구애됨이 없이 「전파」라는 物理的 現象에 입각하여 「不可分」의 一體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개개의 國際電波通信은 單一國家의 主權이 規制할 수 있는 것이 못되어 모든 電波通信은 國際的으로 規制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바 이 特質이 전파통신에서는 그 本質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해저 Cable에 관한 國際法理論¹¹⁾

이러한 事實은 해저 Cable에 의한 國際通信에서 먼저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原則的으로 공간적 연계에 기인하여 「事物의 관할을 配分하려는 國際法秩序」를 수정하게 되어 特定國家의 관할권을 확대하게 된 傾向이다. 해저 Cable에 대한 관할이 國제법상 공간질서의 수정을 實際必要로 하였으면서도 결국 特定國家의 관할권 확대로 귀속되었을 뿐 전기통신에 관한 國際法을 적극적으로 분화구성하지 못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해와 公海를 구분하는 해양법秩序

10) 趙鼎鉉, “電波通信에 關한 國際法” 建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75, pp.40-43

11) 山本草二 宇宙通信의 國際法, 有信堂, 東京 1966, p.14

에 가져하여 대양횡단 Cable의 법적지위를 그 부설장소에 따라 분단한다면 불가분의 일체로서 Cable을 통일적 관할로 결정할 수가 없다.

다음은 공해에 소재하는 해저 Cable의 국제 사법상의 물권적 관할에 관한 소재지법이 불확정된 상태에 있다. 다만 해저 Cable의 파손에 관한 형사판단은 가해선의 旗國에 속한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다. (1884년 해저전선선보호만국연합조약 8조 1958년 공해에 관한 조약 27조)

해저 Cable을 불가분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관할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양면의 입장이 있다. 제1은 Cable기업자(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속인법에 따르자는 것으로 공해상 선박의 旗國주의에도 일치되며 물권관계의 국제사법상 견지에서는 유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는 해저 Cable의 揭陸地法에 따르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Cable기업자의 변동에 무관하고 準據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공권적 요구에도 합치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해저 Cable을 연안국의 영토권의 객체 즉 공간적 연결로 파악하여 한 것이다.

제1의 입장은 공해에 있는 재산에 설정된 소유권, 담보권을 본국법에 의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업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결국 국제통신의 유지를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해저 Cable이 기업주의 본국법에 속할 때 재판관할, 인가조건 기타 Cable에 관한 대외적 관계가 본국의 정치 경제적 정책에 좌우되기 쉬우며 또 揭陸地인 외국의 영역적 지배를 되도록 회피하려고 하게 된다. 제2의 경우는 자국과 교환되는 국제통신용 Cable에 관한 책임분담을 주장하는 연안국(揭陸地)의 요구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양설은 모두 공해 또는 타국영해에 소재한 Cable에 대하여 각각 자국지배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 해저 Cable의 국제법을 특별히 이론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해저 Cable통신의 국제법상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즉 국제법상 일반원칙인 衡平이나 善의 원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전파통신에 관한 法理

전파통신의 경우는 더구나 더 극단적인 국제법상의 영역론을 초월한 것이 되어 국제법 질서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향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전파통신의 매체인 전파는 에테르(ether)의 진동을 매질로 공간을 전파하는 전기적 현상으로서 원래 일정한 영역 또는 공간을 분리 구분하여 귀속시킬 수 없는 성격 즉 물리적으로 초영역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역을

기준으로 국가 권력행사의 범위를 배분하려는 국제법의 전통적 이론(地的 관할권분배의 원칙)의 견지에서 보면 전파통신은 국제법상 연결점인 「場」을 본래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즉 전파통신은 법적으로 초영역성을 가졌다는 것이 된다¹²⁾.

이와 같이 전파의 특성에 관한 한 무선통신의 규제에 대하여 영역적 관할권능에 대체할 만한 관할 이론을 특별히 구상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며 최소한 종래에는 전파통신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 또는 실제적으로만 대처하고 해결하여 왔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기술적 국제협력의 한계성¹³⁾

전파통신은 전기학과 전기자기학을 기초로 한 전파통신과학에 의한 전파현상을 대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 과학기술적 국제협력이 강조되어 왔다. 그 실용양상이 고도화, 다양화한 금일에 있어서도 그 협력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가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적 학술단체, 사기업체, 전문가 등이 제휴한 비정부단체(Non-Government organization)와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속한 전문기판의 참가와 협동이 없이는 ITU가 지향하는 전파통신의 개선이나 그 합리적 사용 또는 인류에의 최대의 보급등 사업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ITU의 상설기관인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를 통한 자국 기업체, 기술자 또는 전문가의 전파통신에 대한 공헌은 매우 큰 것이다.

최근에 실용화된 위성통신망 및 Micro Wave통신망의 개발, 可用주파수 범위의 확대 CATV 및 Data통신방식의 개발과 보급등은 이를 단체나 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질적 참여와 상호협동을 통하여 성취한 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부간 국제협력도 오히려 과학기술적 측면에 편중하고 있는 경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적 측면과 아울러 전파통신분야에는 객관적으로 각국의 정치적, 비공학적 색채가 잠재하는 것이 통하여 비정부단체나 과학기술자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수없이 잡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과학기술적 협력의 한계가 露呈되는 것이며 특히 다음 두가지 비기술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하나는 기술자나 전문가 수준의 협력만으로는 통신내용의 자유 평등을 기하기 위한 법률적 또는 행정적 규제를 설정할 수 없으며 사실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실효적 행정을 관리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국제전파통신망(우주통신망도 포함)등 건설 및

12) 山本草二宇宙通信の國際法, 有信堂, 東京 1966, p.15

13) 上揭書 p17

유지와 같은 방대한 사업은 국가사회적인 용도와는 별도로 박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면 그에 따른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제공동기업의 당사자간에는 경제적 원칙을 여하히 분배하여야 하며 또 국제적 타당성의 적합여부가 문제의 초점이 되어 기업체 상호간의 국제협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제 공동기업의 업무운용, 출자와 이익의 분배, 통신요금의 책정등 관계는 먼저 국가주관 상호간에서 조성과 합의를 거친 다음 그 범위내에서 관계기업상호간에 전문적, 기술적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제적 전파통신에 관하여는 기술적 협력이 외에 국제적 또는 행정적 혹은 비공학적 협력이 동시에 명령되거나 아니하면 아니된다. 물론 이러한 협력에는 그 공동기술이 될 수 있는 法規의 설정이先行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電波通信에 관한 現行法은 기술적 분야에 현중하고 그것을 ITU의 전통적 特質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바 現代社會는 인류생활의 국제화 또는 초국가화 추세가 집중하고 있음이 비추어 ITU는 앞으로 비기술적 분야에 대하여도 상당한 역할을 투입하지 않으면 아니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례는 특히 국제법학계의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¹⁴⁾.

結論

從來 우리가 跛外하였거나 看過했던 傾向을 否認하지 못하는 電波通信과 그最小의 「場」인 無線局에 대한性格, 原理 또는 價值等을 追究하기 위한 序論의試圖로서 그法의 定義, 法理念 및 關係學者の 主張과 學說을 分析檢討하여 보았다. 結局 이들 法理와 學說은 電波通信에 관한 性格 또는 實體를 통하여 그科學性을 立證하는 한편 그 學術의 性格, 課題 및 領域 등을合理的으로 示唆해 주고 있다. 本

(1) 電波通信의 學術의 性格: 電波通信은 人文, 社會 및 自然의 諸科學分野를 고루複合內包하는 統合科學이다. 即 通信內容(人文系)과 通信媒體(自然系) 및 相對的 通信作用(社會系)의 綜合的 有機的 現象인 電波通信은 그의 據點인 無線局을 中心으로 超領域의 宇宙空間現象으로 확대전파되어 人類에게 多樣한 영향과 압력을 加하고 있다. 결국 電波通信은 通信價值를 生產分配함으로써 다른 周邊隣接現象인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福祉等 社會過程과 共存, 結合, 提

携하면서 汎人類와 그 集團인 國際社會에 多樣하고 高度化한 공헌과 기여를 行하는 社會過程인 것이다. 通信價值는 한마디로 人間을 結合 紐帶하는 것이며 無形的 價值이기는 하나 人間의 精神과 智를 鼓吹促進시켜 人類文化를 向上開發시키는 源泉인 것이다.

通信技術者 C.E.Shannon과 Z.Weaver는 V.L.Hartley의 論文(Transmission of Information)을 起點으로 通信原理를 說明함에 있어 通信過程을 綜合科學의 으로闡示 解說하였으며, 社會學者 W.Shramm과 V.Hartley는 通信기능을 基本的 社會過程이라고 보고 社會形成의 기본 紐帶라고 命名한 바 있다. 또 政治心理學者 H.D.Lasswell은 通信의 基本課題를 5個 領域으로 分類하고 送者, 内容, 通路, 受者 및 效果를 分析究明하는 科學이라고 發說하였다. 한편 Shramm과 Lasswell은 通信科學을 N.Winner의 Cybernetics以前의 統合科學이라고 王唱하였으며 Winner自身도 Cybernetics理論 展開의 基盤을 Communication科學에서 捕捉하였다고 自白하고 있다.

(2) 電波通信의 法의 性格: 電波通信은 그 本質의屬性의 우주공간 超領域性으로 말미암아 始初부터 國際的 規制(International Regulation)를 必然的前提로 하여 그 效用을 具現화했다. 이 規制의 内容은 國際法上 諸權利보다도 그의 앞선 義務先行을 原理로 하는 協力과 共存 및 互惠의 原則에 基底한 法理念을 確立하였고 傳統的 國際法 原理의 領域의 分割論을 超越한 非領域의 管轄權을 定立하는 段階에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通信媒體의 建設과 維持 등 技術分野와 行政聯合의 側面에 偏重한 傾向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最近 通信內容에 대한 各國의 관심이 加增됨에 따라 이에 對한 強力한 超國家的 規制가 切實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非技術의 分野에 대한 關心과 必要가 漸增하는 現實에 비추어 ITU의 今後活動 및 立法措置가 注目되고 있다.

(3) 國內動向: 일찍이 ITU會員國이 된(1952년 1月加盟) 우리는 去般(1975. 9월) 正式 加盟國이 된 北韓과의 關係를 결зу어 보아서라도 銳意 國際情勢의 變化와 이 分野에 對한 正義와 真理에 적응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¹⁵⁾.

多幸히 近者 韓國通信學會가 發足하여 電波通信의 本質과 正義 및 真理에 基底한 研究活動과 正論展開를 推進中에 있으며 또 最近에는 大學院 碩士課程에 通信行政의 專攻이 開設되어 通信에 관한 合理的이고 科學의 研究와 教育에 새로운 起點을 마련하여 好으로

14) 趙鼎鉉 “電波通信에 關한 國際法”, 建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75, p.58

15) 金聖在 韓國無線從事者協會報 第3號 國韓無線從事者協會 서울 1975, 10 p4

關係分野의 士氣와 慶欲을 鼓吹하고 있다.

(4) 結言 : 電波通信에 관한 法源인 國際電波通信法(國際電氣通信協約)은 電波通信에 관하여 人文, 社會 및 自然의 各分野가 有機的으로 複合한 統合科學性을 明示 確立하였고 이 原理와 科學性에 입각하여 그 法理念을 定立하였고 이에 기초한 法規制와 立法이 施行되고 있다. 이 法理念과 規制의 目標는 超領域의 世界平和와 人類의 福祉를 指向하고 있어 UN憲章과 世界人權宣言의 理想과 彷彿 혹은 그 歷史性으로 미루어

보아 그에 先行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電波通信에 관한 學術研究와 教育訓練은 勿論 기타 法制등 모든 隣接 또는 關聯領域에서는 이 科學性과 超國家性을 指針으로 혹은 基盤으로 모든 일을 試圖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萬一 이 合理性과 國際性을 離脫 또는 疏外한 때에는 그 效果가 砂上樓閣 또는 試行錯誤의 反復을 自招하는 結果를 白生케 할 뿐 人間을 위하여는 無價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電波管理局, 國際電氣通信協約, 電信部 서울 1968
2. 孫永壽, 電波用語辭典, 電波科學社 서울 1961
3. 趙鼎鉉 國際電波法規論, 實學社 서울 1973
4. 趙鼎鉉 電氣通信法規要論, 電波科學社 서울 1967
5. 洪性化 大陸棚法, 三和出版社 서울 1973
6. 申東旭 國際法改正版, 文理社 서울 1972
7. 中山龍次 歐米ニ於ケル電信電話事業遞信省通信局, 東京 1906
8. 日本郵政省, モントル條約, 電波振興會, 東京 1970
9. 喜安善市 通信と情報, 日本放送出版協會, 東京 1968
10. 加藤秀俊, 文化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思索社, 東京 1971
11. 山本 草二, 宇宙通信の國際法 有信堂 東京 1966
12. 曹圭申, “法學의 研究方法論” 建大學報 1972
13. 曹圭申, “深海開發에 관한 法律制度” 전대학보 1973
14. 趙鼎鉉, “電氣通信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院論文集 2輯 1975
15. 趙鼎鉉 “通信概念確立을 위한 研究” 光云工大論文集 3輯 1974
16. 趙鼎鉉, “無線從事者の 性格과 數育의 背景” 光云工大論文集 4輯 1975
17. 趙鼎鉉, “電波通信에 관한 國際法研究” 建國大學院 1975
18. 韓國無線從事者協會報 第3號
19. 韓國船舶通信士協會報 第25號